

부산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단22849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6. 8. 19.

판결 선고2016. 9. 23.

주 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4,562원 및 그 중 26,015,322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15. 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30,405,7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30,405,7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5. 5. 20. 접수 제17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0%, 피고 E이 50%를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E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5. 5. 20. 접수 제17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채권 발생

(1) 피고 A, B, C은 F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신용보증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24.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피고 A가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보증금액 : 25,000,000원

② 보증대상 대출 :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③ 보증기간 : 2012. 3. 27.(최종적으로 2015. 3. 20.까지로 연장됨)

④ 구상채무의 범위 : 원고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대위변제금,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추가보증료, 지연이율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 피고 A가 2015. 3. 21. 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는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7. 21. 위 대출원금 25,000,000원과 이자 515,322원, 합계 26,015,322원을 지급하였고,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비용으로 501,400원을 지출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일인 2015. 3. 21.부터 위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5. 7. 20.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27,840원이다.

나. 피고 A와 피고 D 사이의 부동산 매매

(1) 피고 A는 피고 D와 사이에 2015. 2. 2.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3. 피고 D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제187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3,200,000원)의 피담보채무 84,566,668원을 변제한 다음 2015. 3.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 B와 피고 E 사이의 부동산 증여

(1) 피고 B은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0.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제173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과 피고 E은 부부였는데, 2015. 8.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D, E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의 2, 을라 제1호증,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구상금 26,644,562원(대위변제금 26,015,322원 + 채권보전 비용 501,400원 + 추가보증료 127,8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6,015,3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7.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6. 2. 26.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2. 2.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1. 3. 24.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개월 19일 후에 피고 A는 대출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A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원고가 2015. 7. 2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위 제1항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부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하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시가는 141,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25,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63,000,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근저당채무 84,566,668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13. 3. 28.자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D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D은 사해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 여부

피고 D은,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 A의 채무관계 및 신용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 D이 제출한 올라 제2호증부터 올라 제4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D과 피고 A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 D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D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은 피고 A와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5. 3.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피고 A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A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금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 D이 악의라는 점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D의 위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A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11. 24.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14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 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가액 147,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84,566,668원을 공제한 잔액 62,433,332원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이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19.을 기준으로 30,405,735원(26,644,562원 + 26,015,322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2. 26.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90,209원 + 2016. 2. 27.부터 2016. 8.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70,964원)이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30,405,735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30,405,7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5. 5. 20.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1. 3. 24.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5. 3.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원고가 2015. 7. 2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

위 제1항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하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시가는 116,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25,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63,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18,999,493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B과 피고 E의 이혼은 가장이혼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증여이므로 사해행위가 되고, ② 진정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E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고, 혼인기간이 24년에 달하고 피고 E도 별도 소득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매수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 B과 피고 E은 1992. 8. 27.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는데, 2015. 5. 21. 부산가정법원 2015호협1337호로 협의이혼 확인신청을 하여 2015. 8. 25. 부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되었고, 자녀의 친권자는 피고 E으로 정하고 피고 B이 피고 E에게 양육비로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혼인기간 동안 피고 B은 공동대표자로 F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 E 역시 G회사, H회사 등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01. 2. 20.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1. 3. 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B과 피고 E은 2001. 3.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을마 제3호증, 을마 제4호증의 1부터 4, 을마 제6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 금정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혼신고 이후에도 피고 B과 피고 E이 계속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고 E에 대한 소장 부분을 피고 B이 2015. 8. 25.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송달받으면서 피고 E과의 관계란에 '배우자'라고 기재한 점, 피고 E 스스로 친정부모는 이혼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적어도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 이혼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협의이혼 확인신청을 접수하기 바로 전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이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만한 별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B과 피고 E 사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재산분할과 관련 없는 단순한 증여계약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즉 ① 24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면서 피고 B와 피고 E은 각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함께 재산증식에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와 피고 E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혼인기간 중 취득한 것으로 양쪽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채무 발생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와 피고 E이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와중에 부담하게 된 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점, ③ 피고 B와 피고 E의 혼인생활에서 일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E의 단독 재산으로 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는 상당하지 않은 과대한 것이고, 위 피고들 사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 정도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2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넘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E은 사해의사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제2부동산 매입 당시 친정아버지로부터 2,500만원을 지원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혼신고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 B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혼인기간 중 피고 E이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까지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하나, 을마 제2호증의 1, 2, 을마 제5호증, 을마 제7호증, 을마 제8호증, 을마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피고 B에게 위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5. 5. 20. 접수 제17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미경

별지